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747
----------	-------

발의연월일 : 2025. 9. 5.

발 의 자 : 김도읍 · 구자근 · 인요한
이헌승 · 조지연 · 조배숙
박성훈 · 박성민 · 권영진
백종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민의 혼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에 대한 혼돈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8조제3호 및 제4호가목).

법률 제 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안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을 각각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38조(결격사유)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 ----- <u>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u> 집행이 면제된----- -----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 ----- ----- ----- ----- -----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	가. ----- ----- <u>끝나거나</u> <u>(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u> 집행이

지 아니한 자	<u>면제된</u> ----- -----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